붙임7 **채용공고문**

근로복지공단 직원 채용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 산재근로자 보상, 의료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 채용예정인원

구분	채용직군	채용인원	근무예정기관
보험사업	별정직 변호사	2명 (지역본부별 1명)	광주·대전지역본부 복지사업부(2개 지역본부)

※ 채용 응시는 1개 기관으로만 가능**(중복지원 불가)**
※ 근무예정기관인 2개 지역본부로 채용하되, **이사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전보 가능**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구 분	주요내용
응시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단,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은 채용공고 마감일('22. 12. 1.) 기준(연령의 경우 임용일 기준)
계약기간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3. 12. 31.** 까지 ※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단위 재계약 가능(정년까지 연임가능)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근무장소 : ① 광주지역본부 복지사업부(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8층) ② 대전지역본부 복지사업부(대전 서구 문예로 137, 7층)
수행업무	• 임금채권 등 공단 소송 수행 업무 • 임금채권 등 소송 지원 업무 • 법률 자문 업무 ※ 자세한 사항은 **NCS 직무기술서** 참조
보수수준	• 보수수준 : 기준 연봉 5,200만원(공단 취업규칙에 따름), 경력에 따라 가산 ※ 경력산정 기준 : 변호사 자격취득일부터 기산
복리후생	• 각종 수당·복리후생 등은 공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 관리규정에 따름

3. 전형 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일정 및 주요내용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2. 11. 16.(수) ~ '22. 12. 1.(목) 18:00: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comwel.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서식 참조]**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변호사(00지역본부, 지원자명)"으로 접수(제출 후 접수여부 확인 요망)** **※ 반드시 지정 서식을 사용하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서류전형	• 선발방법 : 응시원서 기재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실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 '22. 12. 8.(목) 15:00 (개인 SMS)** ※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전형 세부안내)
면접전형 · 직업성격검사 · 증빙서류 제출	• **일시 : '22. 12. 12.(월) ~ '22. 12. 15.(목)** • 면접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 1인 집중면접(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업성격검사 : 면접응시 전·후 직업성격검사 실시 • 선발방법 : 직업성격검사 적격자 중 서류점수(우대사항 포함), 면접점수 합산 고득점 순 ※ 직업성격검사 부적격 또는 면접시험 평균 점수 50점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 ⇒ 면접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항목별 고득점자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실시 • **합격자발표 : '22. 12. 19.(월) 15:00 (개인 SMS)** ※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해서 임용후보등록 안내)
서류검증	• **검증서류 제출 : '22. 12. 19.(월) 15:00 ~ '22. 12. 22.(목) 18:00** • 제출서류 : 서류전형 평가 및 우대사항 관련 서류 • **최종합격자 발표 : '22. 12. 30.(금) 12:00 (개인 SMS)**
임용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 '22. 12. 30.(금) 12:00 ~ '23. 1. 5.(목) 18:00** ※ 임용등록·신체검사·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합격취소 • **임용예정일 : '23. 1. 9.(월)**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채용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 진행

4. 전형별 세부 사항

□ 서류전형

항 목	주요내용
자기소개서 (30점)	•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각 문항별 1,000자 이내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20점)	• 직무전문성, 업무추진성 (각 문항별 1,000자 이내 작성)
경력사항 (25점)	• 응시자격의 업무종사경력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국가·공공기관 및 그 외 기관에서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변호사)와 동일한 업무종사경력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변호사)에 종사한 경력 ② 국가·공공기관 외 기관에서 1년 이상 채용예정분야(변호사)에 종사한 경력 *국가기관 : 「정부조직법」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실무경력은 **채용공고 마감일('22. 12. 1.) 기준**이며,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국가·공공기관 근무경력과 그 외 기관 업무종사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교육사항 (25점)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table>
<tr><th>항목</th><th>주요내용</th></tr>
<tr><td>우대사항
(5점)</td><td>
<table>
<tr><th>구 분</th><th>점 수</th><th>우대항목</th></tr>
<tr><td rowspan="2">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td><td>5점</td><td>•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td></tr>
<tr><td>3점</td><td>•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td></tr>
<tr><td>장애인</td><td>5점</td><td>•「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td></tr>
<tr><td>의사상자</td><td>5점</td><td>•「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td></tr>
<tr><td>생활보호
대상자</td><td>5점</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td></tr>
<tr><td>다문화가정
자녀</td><td>5점</td><td>•「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td></tr>
<tr><td>북한
이탈주민</td><td>5점</td><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td></tr>
<tr><td>경력단절
여성</td><td>5점</td><td>• 임신·출산의 사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80일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경력단절기간 및 사유 확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td></tr>
</table>
※ 상기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td></tr>
</table>

□ 면접전형

항목	주요내용
면접전형 (10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직업윤리 및 공단이해도・직무이해도・자기개발계획・업무추진성 등 평가 - 1인 집중면접 실시

5. 채용비위 신고 및 피해자 구제

항목	주요내용
채용 이의신청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recruit@comwel.or.kr)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채용비위 신고 등	• 채용비위 상설 신고센터: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채용비위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구제: 피해사실 인지 후 즉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6. 응시자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시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작성 및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모두 작성(PDF형식)**하여 서류접수 마감시간**(2022. 12. 1.(목) 18:00:00)**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시험장 입실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서류검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신체검사 결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면접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전형과 관련된 장소, 세부 일정, 합격자 발표 및 임용구비서류 등의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인사기획부(☎052-704-7048)

2022. 11. 16.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붙임 1] NCS 직무기술서

<table>
<tr><td rowspan="4">채용분야</td><td rowspan="4">별정직
변호사</td><td rowspan="4">분류
체계</td><td>대분류</td><td colspan="2">02. 경영·회계·사무</td><td>05. 법률·경찰</td></tr>
<tr><td>중분류</td><td>01. 기획사무</td><td>02. 총무인사</td><td>01. 법률</td></tr>
<tr><td>소분류</td><td>01. 경영기획</td><td>03. 일반사무</td><td>01. 법무</td></tr>
<tr><td>세분류</td><td>01. 경영기획</td><td>02. 사무행정</td><td>NCS 미개발</td></tr>
<tr><td>공단주요사업</td><td colspan="6">○ 산재·고용보험 적용·부과, 산재근로자 요양·보상·재활, 병원운영, 퇴직연금, 근로자복지 지원 서비스, 임금채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td></tr>
<tr><td>핵심책무</td><td colspan="6">○ (경영기획)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법무) 임금채권 관련 법적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각종 분쟁 발생 시 소송업무를 수행 또는 공단의 법률상대리인(소송수행자)의 소송을 지원, 공단 규정 제·개정 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공단 외의 기관·단체 등과의 협약 및 계약 체결 시 내용 검토, 임금채권 법률 지원 및 자문 업무 등
○ (사무행정) 문서작성 및 관리,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td></tr>
<tr><td>직무수행내용</td><td colspan="6">○ (경영기획) 사업환경 및 경영실적 분석, 경영방침 및 계획, 예산 및 사업별 리스크 관리 등
○ (법무) 민사 및 행정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 임금채권 업무등 법률검토 및 자문, 공단 제규정 제·개정지원 등
○ (사무행정) 문서작정·관리 및 데이터 관리, 회의운영·지원 등</td></tr>
<tr><td>전형 방법</td><td colspan="6">○ 서류전형 → 면접전형</td></tr>
<tr><td rowspan="2">일반
요건</td><td colspan="2">연령</td><td colspan="3">무관(단,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는 제외)</td></tr>
<tr><td colspan="2">성별</td><td colspan="3">무관</td></tr>
<tr><td rowspan="2">교육
요건</td><td colspan="2">학력</td><td colspan="3">무관</td></tr>
<tr><td colspan="2">전공</td><td colspan="3">무관</td></tr>
<tr><td>자격요건</td><td colspan="6">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td></tr>
<tr><td>필요지식</td><td colspan="6">○ (경영기획) 내·외부 환경분석 기법, 사업별 핵심성과 평가기준 및 전략기술 등
○ (법무) 국회·정부·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지침, 임금채권보장법, 노동법,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민사소송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 (사무행정) 업무처리 지침 개념, 문서기안 절차 및 규정, 보안규정, 전산 활용능력 등</td></tr>
<tr><td>필요기술</td><td colspan="6">○ (경영기획) 사업기획 및 보고서 작성 기술, 문제예측 및 대응방안 능력, 의사결정 능력, 분석기법, 경영환경 분석기법
○ (법무) 관련법령 해석 및 적용 능력, 소송관련 소장·답변서 작성 등 소송사무전반능력, 법령 및 규정 제·개정안 작성능력, 판례·행정심판 활용능력, 민원대응 및 협상기술, 분쟁조정 능력, 개인정보의 관리 능력, 계약서 등 법적문서의 검토능력 등
○ (사무행정) 데이터 베이스 관리능력, 문서분류 및 관리 능력, 사무기기 활용능력, 회의운영 방법 등</td></tr>
</table>

직무수행태도	○ **(경영기획)**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태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창의적 사고 노력, 의사결정 판단 자세, 주인의식 및 책임감 있는 태도, 객관적 자세 등 ○ **(법무)** 법률적 지식을 이해하려는 성실한 태도, 논리적 태도, 치밀한 검토자세,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능력, 사안별 균형감각및 종합적 판단 능력, 상황 대응의 민첩성 등 ○ **(사무행정)** 기한준수 의지, 원활한 소통 능력, 회의처리 태도 등
필요자격	○ 법률 및 행정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자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홈페이지→NCS·학습모듈 검색

[붙임 2] 임용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개정 2010. 12. 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4. 3. 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6. 4. 5., 개정 2018. 5. 11., 2020. 7. 2.>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0. 7. 2.>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 4. 5., 개정 2020. 7. 2.>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개정 2014. 6. 20.>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7. 9. 5.>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8. 5. 11.>

[붙임 3] 채용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성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 신청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table>
<tr><th colspan="4">장애유형(장애정도)</th><th>면접시험</th></tr>
<tr><td rowspan="4">지체
장애</td><td rowspan="3">상지
지체</td><td colspan="2">공통</td><td rowspan="2">·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td></tr>
<tr><td colspan="2">장애정도가
심한 자</td></tr>
<tr><td colspan="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td><td>-</td></tr>
<tr><td colspan="3">하지지체</td><td>·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td></tr>
<tr><td rowspan="3">뇌병변
장애</td><td colspan="3">공통</td><td>·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td></tr>
<tr><td colspan="3">장애정도가 심한 자</td><td>· 개별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td></tr>
<tr><td colspan="3">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td><td>· 공통 편의지원</td></tr>
<tr><td rowspan="7">시각
장애</td><td colspan="3">공통</td><td>·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td></tr>
<tr><td rowspan="3">장애
정도가
심한 자</td><td colspan="2">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td><td rowspan="3">·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td></tr>
<tr><td colspan="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td></tr>
<tr><td colspan="2">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td></tr>
<tr><td rowspan="3">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td><td colspan="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td><td>·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td></tr>
<tr><td colspan="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td><td rowspan="3">·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 공통 편의지원</td></tr>
<tr><td colspan="2">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td></tr>
<tr><td colspan="2">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3 이하인 사람</td></tr>
<tr><td>청각
장애</td><td colspan="3">공통</td><td>·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의사전달보조요원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관련자료 서면제공</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장애유형(장애정도)</th><th>면접시험</th></tr>
<tr><td rowspan="2">기타</td><td>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td><td>· 장애정도 검토 후 안내</td></tr>
<tr><td>임산부</td><td>· 높낮이 전용책상
· 전담도우미 지원</td></tr>
</table>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선택

※ 증빙자료(의사진단서 등)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편의지원 요청내용 검토 후 편의제공 여부 별도안내